

## ◎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3-126호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 제90조 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에 따라 기업부설 연구소 등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고 있는바, 여러 산업계의 건의를 수렴하여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감면대상물품에 새롭게 고속기류건조기, 복합 사이클부식시험기, 소규모 생물배양기 등을 추가하고 기존 품목 중 일부를 제외하여 총 46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hyeminson@korea.kr](mailto:hyeminson@korea.kr)
- 팩스 : 044-215-8075

###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2,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